

부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412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송현우, 이인수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소554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6. 19.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은 누수 등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맡겨두었다.

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누수 수리 등을 해주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4. 원고에게 '一金 1,000,000원을 정히 보관 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누수 등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하면서 C으로부터 누수 수리 비용 등으로 1,500,000원을 받되, 그 중 1,000,000원은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맡겨둔 돈 1,000,000원을 피고가 C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 피고, C이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여전히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C에게 2018. 11. 19. 위 1,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채무부담의 의사를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또는 ‘지불각서’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문서에 표현된 용어의 법적 의미를 엄밀하게 인식하여 소비대차 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의사였던 것만은 아니고, 그 기재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657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누수 수리 등을 해주기로 하면서 그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일부인 1,000,000원은 위와 같이 피고가 보관하던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던 누수 등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9. C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C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준서,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